

10. 建築士法施行規則中 改正令

建設交通部令 第35號 1995. 10. 17

건축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본문중 “(영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로 한다)”를 “또는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사본”으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를 “건축사협회에”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도지사”를 “건축사협회”로 하며, 동조 제3항중 “도지사에게”를 “건축사협회에”로 하고, 동조 제4항중 “제4호의2 서식의”를 “제4호의2 서식에 의한”으로, “도지사에게”를 “건축사협회에”로 하며, 동조 제5항중 “도지사에게”를 “건축사협회에”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설계도서의 범위) 법 제2조 제3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2. 공사비계산서·공사비명세서등 공사비계산 관계서류
3. 토질의 조사 및 시험등 지질조사 관계서류
4. 사용자재의 내역·명세등 건축자재품질 관계서류
5.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제4조의 제목을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응시원서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영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을 “영 제4조 제1항”으로, “·면허신청서 및 건축사자격 제1차 시험응시원서”를 “및 면허신청서”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응시원서는 별지 제7호의2 서식에 의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 교부등)

①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는 합격증발급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은 별지 제10호의2 서식, 합격증발급대장은 별지 제10호의3 서식에 의한다.

제6조 제1항중 “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각각 “면허증·면허수첩 또는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으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도지사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제1항중 “영 제29조 제1항”을 “영 제29조 제2항”으로 한다.

제7조의2를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 또는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수수료의 금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건축사보신고필증의 교부, 건축사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교부등에 따른 수수

료의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의 신고 및 신고필증의 교부와 재교부의 경우 : 2천 원
 2.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면허증 또는 면허수첩 재교부의 경우 : 2천 원
 3.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 재교부의 경우 : 2천 원
 4. 법 제23조 및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 및 등록갱신의 경우 : 2만 원
 5. 제1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건축사면허취득자의 신고 및 신고필증교부의 경우 : 2만 원
 6. 제1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건축사면허취득자의 신고필증재교부의 경우 : 2천 원
 7.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증재교부의 경우 : 2천 원
- ③ 제2항 각호의 수수료중 당해 사무가 영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위임된 것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2항을 삭제한다.
- 제12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외국건축사면허취득자의 신고) ①외국건축사면허취득자가 영 제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사협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자격)증 사본
2.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②건축사협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7호의2 서식에 의한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17호의3 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외국건축사면허취득자가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17호의4 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외국건축사면허취득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 5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등록갱신신청서는 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의한다.

제15조의 제목 “(용역업자소속 건축사의 신고등)”을 “(엔지니어링활동주체소속 건축사의 신고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 본문중 “법 제25조 제2항”을 “법 제23조 제8항 제2호”로 하며, 동항 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23조 제8항 제2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특수건축물 또는 특수구조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발전·제철·철강·조선·기계·비철금속·석유정제 및 화학·펄프등의 공장건축물
2. 공항여객터미널
3. 고속철도역사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설기간중에 건축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운전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계실·변전실·사무실·창고·휴게실등 부속건축물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소속기관의 범위) 법 제23조 제8항 제3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은행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5. 임업협동조합중앙회

6. 중소기업진흥공단

7.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제17조 제1항중 “용역업자소속 건축사신고필증”을 “엔지니어링활동주체소속 건축사신고필증”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2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중 “건축사의 업무정지를 받은 자가”를 “업무정치처분을 받은 자가 처분을 받은 날부터”로 하며, 동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취소 및 업무정치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노력과 시정여부등 정상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제22조의 2를 삭제한다.

제23조 제1항중 “법 제28조”를 “법 제28조 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는 자기디스켓·팡디스크·마이크로필름 등으로 보관할 수 있다.

제26조 제목중 “보수교육계획”을 “연수교

육계획”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보수교육”을 “연수교육”으로, “보수교육결과보고서”를 “연수교육결과보고서”로, “보수교육계획서”를 “연수교육계획서”로 하며, 동조 제2항중 “보수교육계획서”를 “연수교육계획서”로 하고, 동조 제3항중 “보수교육결과보고서”를 “연수교육결과보고서”로 한다.

[별표 1]·[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의2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의2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0호의2서식]·[별지 제10호의3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의2서식]·[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17호의2서식]·[별지 제17호의3서식]·[별지 제17호의4서식]·[별지 제17호의5서식]·[별지 제19호서식]·[별지 제19호의2호서식]·[별지 제20호서식]·[별지 제21호서식]·[별지 제23호서식]·[별지 제24호서식]·[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25호서식]·[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의2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조의2·제6조·제12조의2·[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험과목 출제범위 및 출제방법(제8조 관련)

1. 건축사자격시험

과 목	출 제 범 위	출 제 방 법
건축법규	건축법 건축사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계획법 주차장법 건설기술관리법	필기(객관식을 원칙으로 한다)
건축설계	설계설명서 투시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단면상세도	실 기

2. 건축사예비시험

과 목	출 제 범 위	출 제 방 법
건축구조	일반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구조역학	필기(객관식을 원칙으로 한다)
건축시공	시공일반 공사관리 건축재료 건축적산	
건축계획	단지계획 건축환경원론 건축계획각론 건축설비 건축사(史)	

[별표 2]

경력의 인정기준(제9조 관련)

경력산정 등급	경 력 구 분	환 산 율
1등급	1. 건축사사무소에 소속하여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종전의 규정에 의한 2급건축사로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경력을 포함한다)	100퍼센트

경력산정 등급	경력구분	환산율
	<p>2. 건설업법 또는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건설업체,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등록한 감리전문회사, 기술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기술사무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지정 또는 등록한 시설안전기술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체에 소속하여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p> <p>3.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 소속하여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p> <p>4. 대학원에서 건축분야에 관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에 있거나 이수한 경력(이 경우 석사과정은 2년, 박사과정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p> <p>5. 건축에 관한 교직경력(주 3시간이상의 시간강사 경력을 포함한다)</p> <p>6. 각종 연구원등 연구기관에서의 건축에 관한 연구경력</p> <p>7. 군의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장교로 복무한 경력</p>	
2등급	<p>1. 1등급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업체·기관·협회 등에서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p> <p>2. 1등급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곳에서 건축관련분야(도시계획·조경·토목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업무에 종사한 경력</p>	80퍼센트

경력산정 등급	경력구분	환산율
3등급	<p>3. 대학원에서 건축관련분야에 관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 에 있거나 이수한 경력(이 경우 석사과정은 2년, 박사과정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p> <p>4. 건축관련분야 교직경력(주 3시간이상의 시간강사 경력을 포함한다)</p> <p>5. 각종 연구원등 연구기관에서 건축관련분야에 관한 연구경력</p> <p>6. 군의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사병으로 복무한 경력 2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력으로서 건축관련분야의 업무 에 종사한 경력</p>	60퍼센트

※비고

1. 경력인정기준일은 시험시행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2. 경력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산정하지 아니 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정지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업무정기간은 경력에서 제외 한다.

[별표 3]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 또는 건축사등의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제22조 관련)

위반사항	처분기준	
	건축사사무소 및 건축사	소속 건축사 및 건축사보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은 사실이 판명된 때		
2.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1년	
3.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때	등록취소	업무정지 12월
4. 건축물의 구조상의 안전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등록취소	업무정지 12월
5. 연 2회이상 건축사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그 정지기간을 통산하여 12월 이상이 된 때	등록취소	
6. 법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불성실한 행위를 한 때		
가. 타인이 작성한 설계도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때. 다만, 다른 법에서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1년	
나. 건축물을 기능상 지장이 있게 설계하거나 공사감리를 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업무정지 8월	업무정지 4월
다. 법 제22조의2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면허취소등 처분내용을 지체없이 건축주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때	업무정지 1월	
7.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기준을 상한을 초과하여 보수를 받은 때		

위반사항	처분기준	
	건축사사무소 및 건축사	소속 건축사 및 건축사보
가. 보수기준의 상한을 50퍼센트이상 초과한 때	업무정지 3월	
나. 보수기준의 상한을 20퍼센트이상 50퍼센트미만 초과한 때	업무정지 2월	
다. 보수기준의 상한을 20퍼센트미만 초과한 때	업무정지 1월	
8.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등을 허위로 신고한 때	업무정지 5월	
9.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가.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업무정지 1년	
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업무정지 5월	
10. 법 또는 건축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		
가.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잘못함으로써 건축물이 건축법 제30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다음에 해당하는 때		
(1)공중에 위험을 끼친 때	업무정지 8월	업무정지 4월
(2)(1)외의 경우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1월
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잘못함으로써 건축물이 건축법 제33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다음에 해당하는 때		
(1)공중에 위험을 끼친 때	업무정지 8월	업무정지 4월
(2)(1)외의 경우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1월

위반사항	처분기준	
	건축사사무소 및 건축사	소속 건축사 및 건축사보
다.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잘못함으로써 건축물이 건축법 제38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다음에 해당하는 때 (1)건축물의 봉괴등 구조안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때 (2)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한 때 (3)(1)및(2)외의 경우	업무정지 1년 업무정지 8월 업무정지 4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4월 업무정지 2월
라.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잘못함으로써 건축물이 건축법 제39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다음에 해당하는 때 (1)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2)(1)외의 경우	업무정지 10월 업무정지 5월	업무정지 5월 업무정지 2월
마.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잘못함으로써 건축물이 건축법 제42조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다음에 해당하는 때 (1)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2)(1)외의 경우	업무정지 8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4월 업무정지 1월
바.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잘못함으로써 건축물이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다음에 해당하는 때 (1)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2)(1)외의 경우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1월
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잘못함으로써 건축물이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다음에 해당하는 때		

위반사항	처분기준	
	건축사사무소 및 건축사	소속 건축사 및 건축사보
(1)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3월
(2)(1)외의 경우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1월
아.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잘못함으로써 건축물이 건축법 제47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다음에 해당하는 때		
(1)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업무정지 8월	업무정지 4월
(2)(1)외의 경우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1월
자.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잘못함으로써 건축물이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다음에 해당하는 때		
(1)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업무정지 8월	업무정지 4월
(2)(1)외의 경우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1월
차.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잘못함으로써 건축물이 건축법 제50조·제51조 또는 제53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다음에 해당하는 때		
(1)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업무정지 8월	업무정지 4월
(2)(1)외의 경우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1월
카.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잘못함으로써 건축물이 건축법 제55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다음에 해당하는 때		
(1)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업무정지 10월	업무정지 5월
(2)(1)외의 경우	업무정지 4월	업무정지 2월
타. 공사감리를 잘못함으로써 건축물이 건축법 제 24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다음에 해당하는 때		
(1)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업무정지 8월	업무정지 4월
(2)(1)외의 경우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1월

위반사항	처분기준	
	건축사사무소 및 건축사	소속 건축사 및 건축사보
파. 건축법 제21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업무정지 4월	업무정지 2월
하. 건축법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중간보고서 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작성한 때	업무정지 5월	업무정지 2월
거.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불성실하게 한 때		
(1) 위 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때	업무정지 1년	업무정지 6월
(2)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을 소홀히 하여 건축물이 이 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된 때	업무정지 5월	업무정지 2월
(3)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을 소홀히 하여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때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1월
너. 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도서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1) 설계도서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업무정지 2월	
(2) 설계도서 기타 서류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때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1월
더.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업무정지 2월	
11. 기타 제1호 내지 제10호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 법 또는 건축법에 위반한 때	제1호 내지 제10호의 기준중 유사한 경우에 준한다.	제1호 내지 제10호의 기준중 유사한 경우에 준한다.

◇개정이유◇

건축사법(1995. 1. 5, 법률 제4918호) 및 동법시행령(1995. 9. 2, 대통령령 제14759호)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설계도서의 범위에 토질의 조사 및 시험 등 지질조사 관계서류와 사용자재의 내역·명세서등 건축자재품질 관계서류를 포함하도록 함(제3조).
- 나. 외국의 건축사면허취득자도 국내의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한 후 건축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신고절차를 정함(제12조의 2).
- 다. 건축사자격시험과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경력의 인정기준을 정함(별표 2).
- 라.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의 위법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하여 처분의 형평성을 도모함(별표 3). <건설교통부 제공>

당신의 집이라면 부실공사 하겠습니까?